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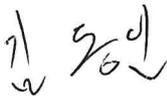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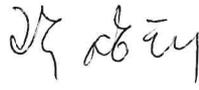
# 학교법인 청운학원

##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 인	2 인
재적임원	9 인	2 인
참석인원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02월 03일(목) (오전)11:00~13:00 (회의소집통보일 : 2022년01월21일)
2. 장 소 : 대전 중구 대흥동 천우빌딩 4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8인) : 김택균, 전병무, 곽상태, 김동인, 이석구, 안봉선, 진재구, 이기육
    - 감사(2인) : 양재득, 서오선
  - 불참 임원
    - 이사(1인) : 한태희
4. 배석자 : 법인직원 2명
5. 안 건
  - ①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 ② 부속유치원 원장 임면(안) 심의
  - ③ 2021학년도 법인회계(일반·수익) 2차 추경예산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일반·수익) 본예산(안) 심의
  - ④ 부속 유치원 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
  - ⑤ 2022년도 고정자산 불용 처리 계획(안) 심의- 부속유치원 차량 매각
  - ⑥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 인사(안) 심의 - 교원신규채용, 교원승진, 교직원 명예퇴직
  - ⑦ 교비회계(2021학년도 3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 심의
  - ⑧ HiT Vision 2028 대전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정(안) 심의
  - ⑨ 학교기업회계 2022학년도 본예산(안) 심의
  - ⑩ 산학협력단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
  - ⑪ 기타안건
    - 세종캠퍼스 추진사항 보고,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

주무자는 재적이사 9명 중 이사 8명이 참석하여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28조의 규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곽 상 태	
----------------	---	--------------	---	--------------	---

정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이사장)은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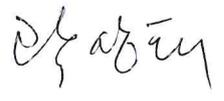
**(제1의 안)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학교법인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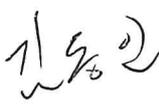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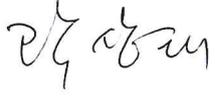
주무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리법인의 정관을 재정비함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신구조문대비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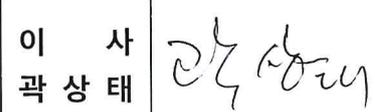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비고
<b>제1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등)</b> ①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개정 2021.01.29.>	<b>제1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등)</b> ①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1.01.29., 22.02.03.&gt;</u>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반영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광 상 태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p>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④항&lt;신설&gt;</p> <p>[본조신설 2018.06.29.]</p>	<p>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p> <p>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p> <p>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p> <p>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준용한다.&lt;본항신설 22.02.03.&gt;</p> <p>[본조신설 2018.06.29.]</p>	<p>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반영</p>
<p>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p> <p>①-③항 중략</p> <p>④-⑨항 이관</p>	<p>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p> <p>①-③항 작동</p> <p>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p> <p>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본항신설 2007.3.29&gt;</p> <p>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 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p>	<p>사립학교법 제21조 반영</p>

<p>이 사장 김택균</p>		<p>이 사 김동인</p>		<p>이 사 곽상태</p>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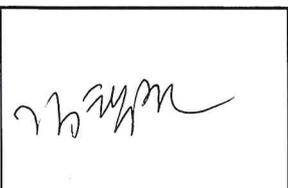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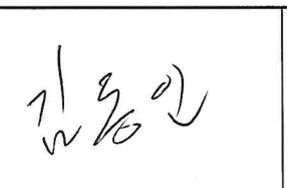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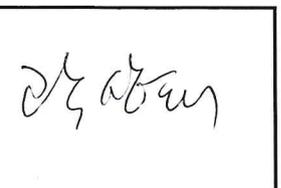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lt;본항신설 2007.3.29.&gt;</p> <p>1. <u>관할청으로부터</u>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p> <p>2. <u>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u> 파면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p> <p>3. <u>관할청의 요구에 의해</u>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u>3년</u>이 경과한 자</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lt;본항신설 2007.3.29.&gt;</p> <p>1. 「<u>사립학교법</u>」 제20조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lt;개정 22.02.03.&gt;</p> <p>2. 「<u>사립학교법</u>」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로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lt;개정 22.02.03.&gt;</p> <p>3. 「<u>사립학교법</u>」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u>6년</u>이 경과한 자&lt;개정 22.02.03.&gt;</p> <p>⑨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u>아니</u> 된다.&lt;본항신설 2007.3.29.&gt;</p>	<p>사립학교법 제21조 반영</p>
<p>제21조의2(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1-3호 중략</p> <p>4.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p> <p>②-③항 중략</p> <p>④-⑨항 이관</p>	<p>제21조의2(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1-3호 좌동</p> <p>4. 관할청의 학교의 장 <u>및 교직원</u>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lt;개정 22.02.03.&gt;</p> <p>②-③항 중략</p> <p>④-⑨항</p>	<p>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1조 반영</p>

<p>이사장 김택균</p> 	<p>이사 김동인</p> 	<p>이사 곽상태</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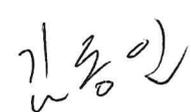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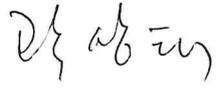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제21조의3 신설	<p>제21조의3(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본조신설 2022.02.03.]</p>	사립학교법 제22조 반영
제21조의4 신설	<p>제21조의4(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22.02.03.]</p>	사립학교법 제22조의2 반영

이사장 김택균		이사 김동인		이사 곽상태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p><b>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생략</b>  <b>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07.3.29., 16.12.01.&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b>조교수</b>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li> <li>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li> <li>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ul> </li> </ol> <p><b>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lt;신설 16.12.01.&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b>1명</b> 이상 포함한다.</li> <li>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할 수 없다.</li> <li>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li> </ol> <p><b>4. 신설</b></p>	<p><b>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생략</b>  <b>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07.3.29., 16.12.01.&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b>부교수</b>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lt;개정 22.02.03.&gt;</li> <li>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li> <li>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ul> </li> </ol> <p><b>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lt;신설 16.12.01.&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b>2명</b> 이상 포함한다.&lt;개정 22.02.03.&gt;</li> <li>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할 수 없다.</li> <li>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li> </ol> <p><b>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lt;본호신설 22.02.03.&gt;</b></p>	<p>사립학교법 제62조 반영</p>

<p>이사장 김택균</p> 	<p>이사 김동인</p> 	<p>이사 곽상태</p> 
--	--	---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1조(징계의결) ① 생략</p> <p>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p> <p>③-⑤ 생략</p> <p>⑥ 신설</p>	<p>제61조(징계의결) ① 좌동</p> <p>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u>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lt;개정 22.02.03.&gt;</u></p> <p>③-⑤ 좌동</p> <p>⑥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lt;본항신설 22.02.03.&gt;</p>	<p>사립학교법 제66조제2항 반영</p>

<p>이 사장 김택균</p>		<p>이 사장 김동인</p>		<p>이 사장 곽상태</p>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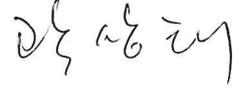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개정규정은 2022년 02월 11일에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21조제8항 각 호,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3월25일 시행한다.</u></p> <p><u>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①개정 정관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u></p> <p><u>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2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p><u>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제21조제8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진재구 이사의 발의와 이석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2의 안) 부속유치원 원장 임면(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부속유치원 원장 임면(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2021년 제5차 이사회에 승인 의결한 부속유치원 원장 임면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허가 안내에 따라 재상정 함을 설명하다. 2021년 10월 31일자로 의원면직 신청한 이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곽 상 태	
----------------	---	--------------	---	--------------	---

강례 원장은 관할청 승인일 기준으로 의원면직하고, 임명이 예정되었던 원장 후보 남궁선혜(2021년 11월 01일부터 ~ 2025년 11월 01일까지)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 임명하기로 재상정 함을 말한다. 관할청으로부터 2022년 2월 중 사립유치원 자격인정을 위한 무시험 검정계획 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절차를 안내 받아 원장 임면을 진행할 것을 설명한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광상태 이사의 발의와 안봉선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부속유치원 원장 임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3의 안) 2021학년도 법인회계(일반·수익) 2차 추경예산 및 2022학년도 법인(일반·수익) 본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2021학년도 법인회계(일반·수익) 2차 추경예산 및 2022학년도 법인(일반·수익) 본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2021학년도 2차 추경예산 중 법인일반회계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2021년도 이행계획 및 법률자문수수료, 교원 소송 관련 비용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되는 등 세입·세출 모두 1차 추경 예산 대비 17,100천원 증액된 372,824천원으로 편성함을 설명하다. 수익사업회계는 용역근로자 직접채용으로 인한 직원보수가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 모두 1차 추경 예산 대비 11,356천원 증액된 수입·지출을 6,505,588천원으로 편성함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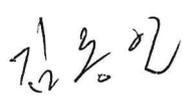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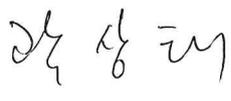
2022학년도 법인회계(일반·수익) 본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법인일반회계는 세입·세출 277,296천원, 수익사업회계는 세입·세출 6,259,085천원으로 편성함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김동인 이사의 발의와 이기육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2021학년도 법인회계(일반·수익) 2차 추경예산 및 2022학년도 법인(일반·수익)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4의 안) 부속 유치원 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부속 유치원 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은 원아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세출 모두 본예산 대비 30,695천 원 감소된 276,15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022학년도 본예산은 보조금 등의 감소로 세입은 251,220천원, 세출은 245,844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광 상 태	
----------------	---	--------------	---	--------------	---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이기욱 이사의 발의와 전병무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부속 유치원 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5의 안) 2022년도 고정자산 불용 처리 계획(안) 심의 - 부속유치원 차량 매각**

의장(이사장)은 부속유치원 차량 매각(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유치원 원아 운행차량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74도2092(차대번호:KMJHK17HPBC009322) 대형승합차량을 매각하고 운행 계획이 없는 18보0498(차대번호:KMHFF41RBGA550464) 승용차량을 매각함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전병무 이사의 발의와 김동인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2022년도 고정자산 불용 처리 - 부속유치원 차량 매각(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6의 안)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 인사(안)심의 - 교원신규채용, 교원승진, 교직원 명예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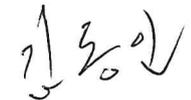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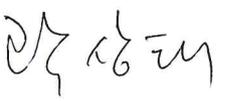
의장(이사장)은 교직원 인사(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총 2개 학과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펫토타케어과는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이오의약과 1명을 채용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채용 지원 인원과 평정 점수에 대하여 보고하고 전임교원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법령에 근거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2명의 점수와 임용예정 우선순위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주무자는 뷰티케어과 부교수 신명자와 HRD 사업단 일반행정직 6급 이강서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었고 명예퇴직예정일자는 2022년 02월 28일임을 말하고 선정기준 및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설명하다.

또한, 주무자는 전임교원승진(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다.

- 아 래 -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곽 상 태	
----------------	---	--------------	---	--------------	---

■ 신규채용 교원 명단

채용구분	No.	채용학과	성명	임용기간
조교수	1	바이오의약과	황인선	2022.03.01. ~ 2028.02.29.

※ 2순위 : 응시번호 2022101008, 3순위 : 2022101013

■ 전임교원 승진(교수 승진 1명)

직위	No.	소속학과	성명	승진임용일
교수	1	치기공과	김정숙	2022년 03월 01일 정년도래일

■ 전임교원 승진(부교수 승진 6명)

직위	No.	소속학과	성명	승진임용일
부교수	1	간호학과	김순영	2022년 03월 01일 ~ 2028년 02월 29일
	2	교양교육원	신동은	
	3	의무부사관과	정순철	
	4	의무부사관과	이창훈	
	5	임상병리과	김진수	
	6	방사선과	이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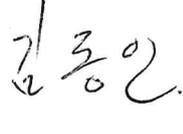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진재구 이사의 발의와 이석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 인사(안) - 교원신규채용, 교원승진, 교직원 명예퇴직'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7의 안) 교비회계(2021학년도 3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교비회계(2021학년도 3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우선 2021학년도 3차 추경예산은 신입생 감소에 따른 국가 장학금 대상자 감소와 등록금 수입의 감소 등으로 세입·세출 모두 2차 추경예산 대비 8,125,492천원 감소한 58,599,34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학년도 본예산은 임의건축기금 인출 등을 반영하여 68,580,884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은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을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영계획을 확립

이사장 김택균		이사 김동인		이사 곽상태	
------------	---	-----------	---	-----------	---

을 목표로 함을 말하다. 또한, 2025년까지 감소되는 등록금 수입의 재정 예측과 기금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이기육 이사의 발의와 김동인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교비회계(2021학년도 3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8의 안) HiT Vision 2028 대전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정(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HiT Vision 2028 대전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정(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이전에 승인 의결된 'HiT Vision 2028 대전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대외적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련 용어의 최신화, 직제 조정과 사무분장 변경을 반영한 주관부서 및 공동추진부서 재조정, 발전계획 내용점검과 행정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추진과제 변경, 중복된 추진과제 정리와 과제의 실행가능성 검토결과를 고려한 과제 삭제 및 통합, 디지털 전환의 시류를 반영하고 대학의 학사구조 다양화를 위한 관련 내용 추가(메타버스,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 등)를 추진과제로 변경 하였으며, 발전지표의 단계별 목표 값을 현실화 하고, 행정부서의 중장기적 추진 업무와 발전계획의 연계관리를 위한 산출식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지표로 변경 하였음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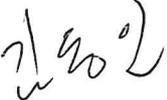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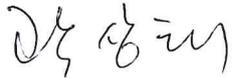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전병무 이사의 발의와 안봉선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HiT Vision 2028 대전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9의 안) 학교기업회계 2022학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학교기업회계 2022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인상되는 장기요양급여 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모두 3,164,189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김동인 이사의 발의와 곽상태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학교기업회계 2022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곽 상 태	
----------------	---	--------------	---	--------------	---

**(제10의 안) 산학협력단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산학협력단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혁신지원사업비 감소와 보건안전교육사업의 감액 등으로 2021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모두 본예산 대비 622,206천원 감액된 8,047,74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학년도 본예산은 증가되는 정부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모두 9,226,069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이기욱 이사의 발의와 안봉선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 정수 9명 중 참석 이사 8명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산학협력단회계(2021학년도 1차 추경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 기타안건

#### 세종캠퍼스 추진사항 보고

의장(이사장)은 세종캠퍼스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현재까지 세종캠퍼스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한 현장형 실습시설,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구역을 권역화하여 각각 현장형 실습실습 클러스트, HCC 클러스트, 본부 및 강의 구역 주차장 시설 등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다.

이에 의장(이사장)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산업과 교류 활성화 할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다.

#### 산학협력중장기 발전계획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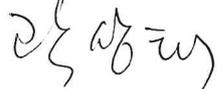
의장(이사장)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지역사회 상생발전 보건 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비전아래 각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에 진재구 이사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단계별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의결사항)

이사회이록 간서명 및 간인 대표 이사로 김택균 이사장, 김동인 이사, 곽상태 이사를 전원 찬성으로 선임함을 전원 찬성하다.

이 사 장 김 택 균		이 사 김 동 인		이 사 곽 상 태	
----------------	---	--------------	---	--------------	---

7. 폐회선언

13시 00분 이상의 회의를 마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2. 02. 03.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 사 장 김택균



이 사 전병무

(인) 신병무

이 사 김동인



이 사 곽상태

(인) 곽상태

이 사 한태희

(인)

이 사 진재구

(인) 진재구

이 사 이석구

(인) 이석구

이 사 안봉선



이 사 이기육



감 사 양재득

(인) 양재득

감 사 서오선

